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융지주회사(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기본 자본에 대한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연계된 거래상대방그룹(이하 이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의 익스포져(다음 각목의 익스포져를 제외한다) 합계 비율(이하 이조 및 제25조의2에서 “거액익스포져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25 이하. 다만, 거래상대방이 제25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을 포함한다) 또는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하

가.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익스포져
나. 정부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보유한 주식 익스포져로서 법령 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0 제6항 및 동법 제161조의11 제9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국가 위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익스포져

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상대방이 가계자금 관련 대출에 보증한 익스포져

(1) 「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 및 동법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자한 국민행복기금

마. 국민생활 안정 등 공익적 목적 또는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익스포져

제25조의2제4항제2호 중 “시스템적 중요”를 “금융체계상 중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가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에 대한 거액익스포저비율을 100분의 15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신규 선정된 은행지주회사가 본문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정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본문에 규정된 한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의4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제25조제1항제4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경영지도비율) ①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50조, 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u><신 설></u></p>	<p>제25조(경영지도비율) ①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금융지주회사(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기본 자본에 대한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연계된 거래상대방그룹(이하 이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의 익스포져(다음 각목의 익스포져를 제외한다) 합계 비율(이하 이조 및 제25조의2에서 “거액익스포져 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25 이하.</u> <u>다만, 거래상대방이 제25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을 포함한다) 또는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하</u> <u>가.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u> <u>참작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u> <u>익스포져</u> <u>나. 정부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u> <u>·보유한 주식 익스포져로서 법령</u></p>

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0
제6항 및 동법 제161조의11
제9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국가 위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익스포저

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거래상대방이 가계자금
관련 대출에 보증한 익스포저

(1) 「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사업을 영위
하는 보험회사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 및 동법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자한 국민행복기금

마. 국민생활 안정 등 공익적 목적
또는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
위원회가 인정하는 익스포저

② ~ ⑥ (생략)

제25조의2(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지주회사 선정 등) ① ~ ③ (생략)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지주회사 선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본(이하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이라 한다)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중 큰 값으로 한다.

- 1. (생략)
- 2.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정하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해당하는 경우 바젤은행 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본비율

⑤·⑥ (생략)

<신설>

제25조의4(경영지도비율 등에 대한 특례) ①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

- 1. (현행과 같음)
- 2. -----
----- 금융체계상 중요한 -----

⑤·⑥ (현행과 같음)

⑦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가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에 대한 거액 익스포저비율을 100분의 15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신규 선정된 은행지주회사가 본문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정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본문에 규정된 한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의4(경영지도비율 등에 대한 특례) ① -----

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전문은행”이라 한다)을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과 그 외의 은행을 함께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신설>

②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5조제1항제4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현행과 같음)